

제26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2.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2월 2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20 - 13
- 나. 제 출 자 : 송순효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 2020년 2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 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용어정의(안 제2조)
- 다.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
- 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명확화(안 제5조)
- 마.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명문화(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제4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2019.8.5)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체육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보조사업 지원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비 지급기준 및 지도·감독 등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관한 용어정의

2)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추가
 -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

-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

3)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규정
 -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 사무시설 임차료
 -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4) 지도 감독 및 조치사항(안 제6조~제7조)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명문화

※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 별첨 참고

다. 종합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한 체육단체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아울러 기존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체육 각 분야(전문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였으나,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각 분야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 조례로 운영비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기존 조례	개정안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용어 정의 (제2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용어정의
체육의 진흥 (제3조)	(제2조 제2항) 생활체육	(제3조 제2항)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
경비의 지원 (제4조)	(제3조 제2항)보조금 지급대상사업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제2항)보조금 지급대상사업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u>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추가)</u> 4. <u>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추가)</u> 5. <u>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추가)</u> 6. <u>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추가)</u>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비 지원 (제5조)	-	(제5조)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지도·감독 (제6조)	-	(제6조)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의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 (제7조)	-	(제7조) 지도·감독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 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